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9. 6. 11.(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석대권(위원장), 강옥희, 김왕직, 박선희, 유나경, 이향미, 정귀원, 조용현, 홍형순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수립
2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주변 마당 등 보수정비
3	아산 외암마을 주변 축사(우사) 증축 적법화
4	영주 괴현 고택 이전지 배치계획 변경
5	남양주 궁집 주변 주차장 및 둘레길 조성
6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
7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
8	정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9	안동 화회마을 내 CCTV설치
10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퇴비사 신축
11	성주 한개마을 주변 감응사 석축 정비
12	남양주 궁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보고사항】

13	현상변경 허가 결과 보고
----	---------------

심 의 사 항

1.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수립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의 종합정비계획(보완)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의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 ※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내역 : 제1차(2002~2012년), 제2차(2013~2023년)
 - 동 안건은 관람환경 개선, 주민불편 해소, 마을 정비, 나대지 신축 등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아산 외암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보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 ▶ 2018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7.17.) 심의 : 보류
 - 보류사유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보완 후 재심
 - ▶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2.12.) 심의 : 부결
 - 부결사유 : 보류사유에 따른 보완 미실시
-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보완 실시(전 문화재위원 윤홍로, 전문위원 이왕기, 이천우, 2019.3.28.)
-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아산시장
- (2) 주요내용
 -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활성화
 - 마을앞 주차장(1주차장) 폐쇄 및 저잣거리 주차장(2주차장)과 통합, 기존 1주차장 진입도로(보차겸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 마을우회도로(주민전용) 신설
 - 초가이영잇기 전수관 건립, 외암마을 둘레길 조성, 저잣거리 체험식빙고 설치, 마을 입구 전광판 설치, 마을 내 경관조명 설치(시범운영) 등
 - 가족정비계획 보완(변형가옥 현황조사 및 정비방안 제시)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바탕으로 가옥별 보존상태 검토 및 보수·정비방향 제시
 - 나대지 내 건축행위 검토
 - 나대지 현황조사
 - 원형고증에 따른 건축행위 검토
 - 초가이영잇기 개선방안
 - 직영 및 계약재배 등 벚질의 안정적 수급체계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및 초가이영잇기 전수관을 통한 쥔공에 활동 등 지원 등
 - 초가이영잇기 시방 등 원형회복 및 정비기준 마련
 - 마을 자치규약(안) 마련
 - 마을환경 보존, 가옥의 변형 방지, 재난 예방 등 6개 항목 17개조

라. 검토의견

- ‘아산 외암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으로,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심사 및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일부 내용오류 등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

2.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주변 마당 등 보수정비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주변 마당 등 보수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주변 마당 등 보수정비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과 연결)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 지정구역 및 1구역 : 개별 심의
- ※ 아산시에서는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주변 시·도민속문화재 3개소(해평윤씨 일가 가옥)를 포함한 마을 일대를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이라고 명명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 소 개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 일원
- (4) 신청내용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주변 마당 등 보수정비
 -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수정비(문화재 지정구역)
 - 사랑마당 정비
 - 화오(화단)설치 : 좌측 담장 옆 1개소(높이 20cm×길이 13.2m)
 - 수목 보식 : 향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제거 / 화살나무, 매화나무, 철쭉, 맥문동, 무궁화, 철쭉, 배롱나무, 상록패랭이 식재
 - 사랑채 담장 정비 : 담장 보수 48m
 - 진입마당 정비
 -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차량 2대분 구획, 잔디블럭 설치 107㎡, 주변 식재(화살 3주, 이팝 5주, 명자 10주, 단풍 3주, 맥문동 270본, 초본류 380본)
 - 주민쉼터 조성 : 수목 제거 및 식재(편백 6주 제거/느티 3주, 단풍 3주, 초본류 780본), 판장 23.2m 설치(화장실 등 차폐)
 - 주변 마당 및 연못 정비(통상 ‘중앙마당’이라고 함)(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마당 정비
 - 부지면적 : 약 2,430㎡
 - 정비내용 : 타작마당 개념을 살려 단이 없는 넓은 마을마당 조성(바닥 잔디 식재 1,005㎡) 및 목재포장(60㎡)을 통한 휴게공간 조성 및 행사무대로 활용, 마을마당 주변 녹지공간 조성
- 마당 내 연못 정비
 - 연못 수심 조정 및 보호책 설치(안전사고 예방), 연못 후면 소나무 수림 조성(그늘 제공)
- 시설물 설치 : 이동식 차일 7개소, 벤치 5개소, 계단 4개소, 판장 32.7m(높이 1.4m), 판측담장 32.4m(높이 1.1m), 경관석 및 괴석 14개소, 디딤석 172m, 디딤석+잔디 69.64㎡
- 마사토 포장 : 1,473.64㎡
 - 윤보선 대통령 생가 앞, 마을마당 둘레, 윤승구·윤일선 가옥 진입마당
- 기타 시·도민속문화재 등 정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윤승구 가옥 내 아까시나무 3주 제거
 - 윤일선 가옥 판측담장 신설 27.8m(높이 1.2m)
 - 윤승구·윤일선 가옥 진입마당 정비(마사토 포장)
 - ※ 기타 수목의 가지 고르기, 피해목 제거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행위)에 따른 경미한 행위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2.)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 사랑채 담장보수는 필요하나, 사랑마당에 식재되는 수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랑채 내 화단설치 및 진입마당정비(수목식재 등)로 인해 해당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중앙마당정비
 -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요소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활용 목적 등에 맞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시설(○○○), 조정(○○○)

3. 아산 외암마을 주변 축사(우사) 증축 적법화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축사(우사) 증축부분 적법화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주변 축사(우사) 증축부분 적법화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3구역(지정구역에서 약 280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 3구역 : 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 18m 이하 허용(동·식물 관련 시설 개별 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 제 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 ○ ○
- (4) 신청내용 : 축사(우사) 증축 적법화
 - 기존면적 : 840.88㎡
 - 증축면적 : 1,818.68㎡(일반건축물 확장 828.05㎡, 가설건축물 신설 976.83㎡, 창고 신규증축 13.8㎡)
 - 층수 및 높이 : 1층, 최고높이 8.9m(평균 5.8m)
 - 건축구조 : 강파이프구조, 경량철골구조
 - ※ 차폐시설 설치 : 외암마을쪽 가설건축물 일부 철거(142.93㎡)하여 조경 식재(높이 4m) 예정
 - ※ 신청 축사는 젖소 농장으로 사육두수는 약 70마리임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전문위원 ○ ○ ○/2019. 5. 29.)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기존 축사(우사) 내에 허가 없이 증축된 축사시설에 대해 적법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증축된 축사시설 대부분이 기존 축사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외암마을 진입부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및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2018. 7. 26. 발표) 등에 따른 적법화 조치사항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외암마을 진입부 차폐식재할 것

4. 영주 괴현 고택 이전지 배치계획 변경

가. 제안사항

영주 다목적댐 건설로 이전되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현고택」 이전지 배치 계획(전통문화재협단지)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괴현 고택의 이전·복원의 문화재적 가치보존 및 일체성 등을 심의 하고자 하는 사안임
- 2016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4.12.)에서 월은정 복원을 포함한 「영주 괴현 고택 이전지 배치계획」에 대해 「발굴조사 실시 후 재검토」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2018년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월은정 복원 판단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청하였음
- ※ 추진경과(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처리내역)

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처리 내역	○ 2012. 6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현고택 이전대상지 선정) : 원안가결 ○ 2013. 3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현고택 배치계획 검토) : 조건부가결 ↳ 경관, 구체적 배치계획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 ○ 2015. 5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현고택 배치계획 변경) : 조건부가결 ↳ 실시설계추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2016. 2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현고택 배치계획 변경(월은정복원포함)) : 보류 ↳ 발굴조사 실시 후 재검토
발굴조사 결과	○ 기 간 : 2017. 4월 ~ 2018. 8월 / 한국문화연구원 ○ 발굴결과 : 추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려~조선시대까지의 건물지 등 유구가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월은정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장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현고택」

- 소 제 지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 이전예정지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 영주 괴현고택 이전지 배치계획 변경

구 분	당초 심의 (2016.4.-보류)	금회 심의
변경사항	○ 괴현고택 내 월은정 복원 ○ 덕산고택 이격 및 담장 직선화	○ 월은정 재현 ○ 괴현고택 담장 선형 변경

- 변경사유
 - 문화재 지정면적이 아닌 등기부 지적면적 확보로 인한 담장선형 변경
 - 월은정 재현을 위한 부지 확보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9. 5. 22.)

- 월은정은 거리를 두고 재현하는 것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모와 형식은 최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함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괴현고택 이전복원 배치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지정구역은 당초 괴현고택 해제 전 담장 선형에 따른

5. 남양주 궁집 주변 주차장 및 둘레길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주변 주차장 및 둘레길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궁집 주변 주차장 및 둘레길 조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지정구역과 1구역(원지형보존지역, 이격거리 0~50m)에 해당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남양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3-1번지 일원
- (4) 신청내용 : 둘레길, 쉼터 및 주차장 조성
 - 둘레길 조성(등산로 정비 230m, 테크계단 59m, 둘레길(테크) 560m)
 - 쉼터 조성(높이 109m', 테크계단 62m')
 - 주차장 조성(주차장 1,243.5m', 34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27.)

- 둘레길 및 쉼터 조성
 - 둘레길 조성은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총 길이 849m(기존길 230m/테크계단 59m/테크 560m), 폭 2m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둘레길의 약 73%(619m)에 테크를 설치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테크설치지역에 대한 상세설계도면이 누락되어 있음.

6.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봉화 만산 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9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한옥) 신축
 - 대지면적 : 404m'
 - 건축면적/연면적 : 89.4m'/89.4m', 높이 : 6.53m(1층)
 - 구조 : 한식목구조, 기와붕기
 - 주변정비 : 조경 1식(교목 4본, 관목 20본)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19.)

- 역사문화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한옥신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신청부지에서 문화재 고택 내부를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담장, 수목 등의 차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궁집 주변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둘레길 조성이 필요하며, 인위적인 시설물(테크)을 최소화 하는 등 화재, 방범,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주차장 조성
 - 남양주시는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궁집을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역사·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함께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역사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 둘레길 등 기반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매표소, 화장실 등 진입동선(평내근린공원 포함)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 후 재신청

마. 검토의견

- 전문가 현지조사(4.19.) 이후 차폐용 한식담장을 추가 보완하였으나, 낮은 위치에 담장을 설치하여 차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나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반계획고를 낮추고, 문화재 내부가 조망되지 않도록 차폐 방안 제출

7.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에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30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 ○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한옥) 신축
 - 대지면적 : 417㎡
 - 건축면적/연면적 : 89.4㎡/89.4㎡, 높이 : 6.53m(1층)
 - 구조 : 한식목구조, 기와쌓기
 - 주변정비 : 조경 1식(교목 4본, 관목 21본)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회 ○○○/2019. 4. 19.)

- 역사문화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한옥신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신청부지에서 문화재 고택 내부를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담장, 수목 등의 차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8.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에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개별심의, 100m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건물은 2019년 제2차 민속분과 심의 시 부결(건축 외관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되었던 사항으로 급회 건물외관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 ○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노후주택 철거)

구 분	기존 신청 (2019.4월-부결)	급회 신청
대지면적	317㎡	317㎡
건축면적	111.75㎡	111.75㎡
연면적	111.33㎡	111.33㎡
높이/층수	4.85m/1층	6.7m/1층
구조	경량목구조	경량목구조
마감	기와형칼라강관지붕 벽:황토색타일,사이딩(페인트)	한식기와지붕 벽:황토색스타코, 사이딩(페인트)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반계획고를 낮추고, 문화재 내부가 조망되지 않도록 차폐 방안 제출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3. 27.)

- 사업대상지에 기존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신축주택의 전체적인 규모와 높이의 증가 폭 역시 미미하나 해당 문화재에서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마감재 및 색상 등 건축외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기존 부결사유인 '건축외관'에 대하여 재료변경 및 건물높이 변경으로 재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붕 층고 낮게 조정할 것

9. 안동 하회마을 내 CCTV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CCTV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내 CCTV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76-1 외
- (4) 신청내용 : CCTV설치
 - 카메라 13대(무선장비 포함) 등(기존 보안들에 부착하는 방식)

라. 검토의견

- 안동 하회마을 내 문화재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가로등에 부착(무선통신)하는 방식으로 역사문화환경에 가중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2019. 5. 30.)

-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기존 축사와 주택 등으로 차폐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태양광설비 설치는 최감찰택을 비롯해 인접한 고가, 최혁재 고가, 최동근 고가 등 도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시·도문화재위원회 의견수렴 후 재심의

10. 보은 최감찰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퇴비사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은 최감찰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2구역(평지붕 5m/경사지붕 7.5m, 150m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건물은 2019년 제2차 민속분과 심의 시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되었던 사항으로 급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택」
 -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괴산군 삼승면 선곡리 ○○○
-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구 분	기존 신청 (2019.4월-부결)	금회 신청
사업내용	- (축사)지붕 위 태양광모듈 설치 270장, 538.38㎡	- (축사)지붕 위 태양광모듈 설치 270장, 538.38㎡ - 퇴비사 신축(건축면적 196㎡, 연면적 196㎡, 높이 6.6m(1층), 강파이프구조)
설치높이	GL+8400mm (건물높이 7.4m, 구조물설치 1.0m)	GL+7950mm (건물높이 7.4m, 구조물설치 0.5m)
설치형태	용마루 기준 좌측설치	용마루기준 좌우 분산설치

11. 성주 한개마을 주변 감응사 석축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감응사 석축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주 한개마을 주변 감응사 석축 정비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성주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67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56(대산1길 234)
- (4) 신청내용 : 석축정비
 - 자언석석축(옹벽형) L=40.15m(H=1.0m~3.36m)
 - 한식토석담장 L=8.52m, H=1.0m
 - 잔디식재 25.20㎡, 수목이식 4주

라. 현지조사의견(전 문화재위원 ○○○/2019. 5. 31.)

- 감응사 내 산신각 전면 석축 정비공사는 성주한개마을에서 시각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남양주 궁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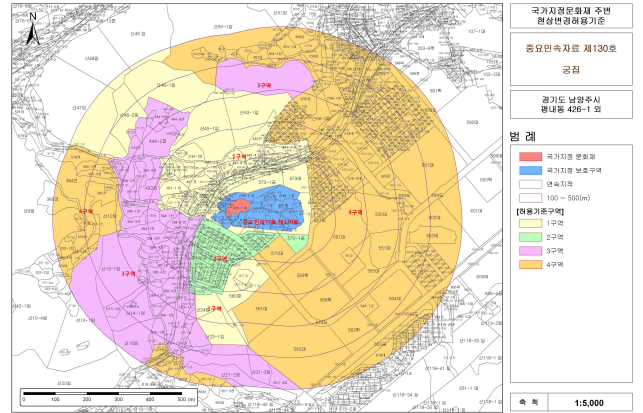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외
- (2) 조정내용
 - 1구역 일부 2구역으로 조정(문화재 배면, 남양주시 도시공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른 문구 수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공통사항 반영
- (3) 추진경과
 - 2019년 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금회 조정신청된 3구역을 2구역으로 변경)
 -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고('19. 4. 18. ~ 5. 7.) : 의견없음
- (4) 조정내용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9-76호 2009. 9. 11)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 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 최고높이 11m(3층)이하 신축 · 증축 허용	○ 최고높이 14m(3층)이하 신축 · 증축 허용
3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최고높이 14m(4층)이하 신축 · 증축 허용	○ 최고높이 17m(4층)이하 신축 · 증축 허용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임피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응)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제검도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은 1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구역은 남양주시 안대로 2구역으로 존치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주민의견 청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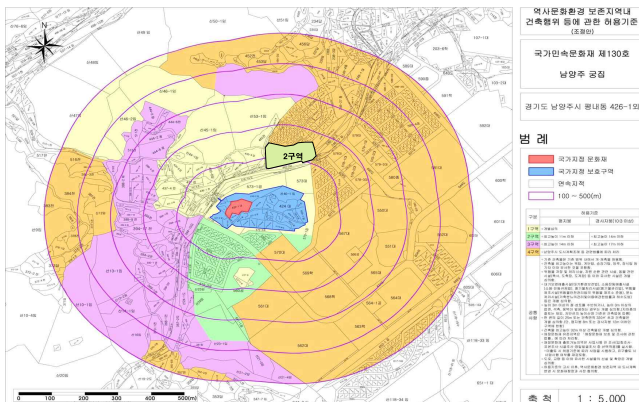
- 의견수렴 기간 : 2019. 4. 18.~2019. 5. 7.
-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바. 검토의견

- 본 건은 '19. 4월 조건부 가결(일부 구역 조정)된 사항이며, 일부 구역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공고 결과 지역주민 의견제출이 없어 본 조정안대로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3. 11.)

- 남양주 궁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중
 - 1) 경춘가도(6차선) 인접지역의 1구역(개별심의)을 3구역(평지붕 14m/경사지붕 17m)로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주변 건물높이(11m 내외)를 감안하여 2구역(평지붕 11m/경사지붕 14m)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2) 평내 도시공원 내 1구역(개별심의)에 대하여는 화길용주 묘터(조각지)를

13. 현상변경 허가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보 고 사 항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봉화 만산 고택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 일원	□ 봉화 만산 고택 주택 단독주택 증축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29-1 ○ 허용기준 : 1구역(만산고택 410m, 권진사택 25m, 개별심의)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증축 <table><tr><th>구분</th><th>기존</th><th>증축</th></tr><tr><td>건축면적</td><td>81㎡</td><td>23.96㎡</td></tr><tr><td>연면적</td><td>67.14㎡</td><td>23.96㎡</td></tr><tr><td>높이</td><td>6.9m</td><td>6.9m</td></tr><tr><td>층수</td><td>지상1층</td><td>지상1층</td></tr><tr><td>구조</td><td>벽돌구조 /기와</td><td>경량철골구조 /철판기와</td></tr></table> ○ 현지조사의견(전 문화재위원 ○○○/2019.5.1.) - 동 증축건에 대하여 ‘봉화 만산 고택’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나 - 약 20m 이격되어 있는 시도문화재 ‘권진사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상북도’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경상북도 의견(2019.5.10.) - 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것으로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	구분	기존	증축	건축면적	81㎡	23.96㎡	연면적	67.14㎡	23.96㎡	높이	6.9m	6.9m	층수	지상1층	지상1층	구조	벽돌구조 /기와	경량철골구조 /철판기와	허가	*19.6.4.
구분	기존	증축																				
건축면적	81㎡	23.96㎡																				
연면적	67.14㎡	23.96㎡																				
높이	6.9m	6.9m																				
층수	지상1층	지상1층																				
구조	벽돌구조 /기와	경량철골구조 /철판기와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